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9

2024. 9.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해우)

1.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를 지정·고시 [2020.8.28./2022.10.26. (개정)] 하였음.
-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나. 사 무 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다. 추진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 필요성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 지원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 직 : 10본부(10실, 17팀), 감사 1부 1팀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00백만원)의 40%이상 매칭
 - ※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 21.8.26.)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출 연 금	1,800,000	900,000	900,000	미정

※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212억 원(국비 156, 지방비 5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됨.

2.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과 출연 적정성

- 홍릉특구¹⁾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의료 관련 연구 기관 및 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20.8.)하면서 조성됨.
 - 연구개발특구는 지역내 산·학·연 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 중 R&D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유치 등을 위한 2km² 이내의 소규모 배후공간을 지정함.
- 연구개발특구의 사업 구조는 먼저 과기부에서 육성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면 기술핵심기관²⁾이 기술개발과 연구,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³⁾ 관리와 입주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조임.

1) 홍릉 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중심병원인 고려대의료원, 양·한방 융합 의료기관인 경희대의료원이 자생적으로 집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20.8.)되어 지역 내 산·학·연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2) 기술핵심기관이란 KIST, 고려대, 경희대이며, 공공연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개 유형이 있음.

- 한편 특구진흥재단은 홍릉특구 등의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립된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홍릉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기술성장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임상시험 지원▶인·허가, 제품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 특화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 기술핵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희대, 고려대
- 배후공간 :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 범 위 :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 면 적 : 1.36km²(기술핵심기관 1.30km², 배후공간 0.06km²)
- 2024년 홍릉특구 사업예산 : 25억원(국비 16, 시비 9)
- 사업구조



- 홍릉특구는 2024년도의 경우 정부 R&D 예산 감소로 국비 16억원·시비 9억원 등 총 25억원이 출연되었고, 그 중 시비 9억원은 지역특성화사업비 8억4천만원, 특구재단 간접비(기획 등) 6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3) 배후공간이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 예정지 또는 개발 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임.

3. 특구진흥재단 출연의 적정성

-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⁴⁾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⁵⁾에 근거하여,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사업(기술상용화지원)을 추진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국비 대비 ‘지방비 40% 이상’을 편성토록 한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방비 매칭 기준(2021.8월)’에 근거하여 2025년도 국비 20억원에 대한 9억원(45%)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9억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특성화사업비(8억4천만원)와 특구재단 간접비(6천만원)로 편성될 예정임.
- 홍릉특구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9억원은 국비 20억원의 40% 이상 편성하는 규정에 부합되며, ▶내년에 실시될 홍릉강소특구 종합평가에서 지방비 편성 규모 및 활성화 역량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 ▶추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가 차등 편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규모로 사료됨.
- 한편 2023년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이전(28건), 연구소기업설립(8개), 신규창업건수(14건), 매출액(75억원), 일자리 창출(38명), 투자연계(195억원) 등 목표 대비 전 항목에서 초과달성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실적은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 목표가 차년도에 축소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홍릉 강소특구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 >

성과지표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22년 실적	'23년 목표	'23년 실적
기술이전	20건	27건	13건	26건	17건	28건
연구소기업설립	7개	12개	5개	13개	6개	8개
신규창업건수	10건	42건	7건	17건	9건	14건
매출액	45억원	67억원	32억원	81억원	52억원	75억원
일자리 창출	60명	157명	43명	167명	35명	38명
투자연계	5억원	138억원	10억원	229억원	20억원	195억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59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2020.8.28./2022.10.26. (개정)〕 하였음
- 나.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나. 사무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 지원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직 : 10본부(10실, 17팀), 감사 1부 1팀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00백만원)의 40%이상 매칭
 - ※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21.8.26.)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출연금	1,800,000	900,000	900,000	미정

※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212억 원(국비 156, 지방비 5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 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박세준 (☎ 2133-8749)